

의안번호	2216114
의 퇴 인	임호선의원
회 답 일	2026.4.6.
추 계 번 호	26B023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1호나목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제2조) 1. “대도시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 소재대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table> <tr> <th>현행</th> <th>개정안</th> </tr> <tr> <td> 나. <u>가목1) 이외의 지역</u> <u>으로서</u>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td> <td> 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 </td> </tr> </table>	현행	개정안	나. <u>가목1) 이외의 지역</u> <u>으로서</u>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	의무규정
현행	개정안						
나. <u>가목1) 이외의 지역</u> <u>으로서</u>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조제1호나목 (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대도시권 정의 요건 중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현행과 달리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도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나목에 따라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에 따른 대도시권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제3조²⁾),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제3조의2³⁾),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이행(제7조의2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제10조제1항⁵⁾), 광역철도 건설 또는 개량 비용의 분담(제10조제2항⁶⁾) 등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

2)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②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6)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이하 생략)

시권 포함 요건을 완화하는 법적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실제 대도시권의 구체적인 범위 확대 여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대도시권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내용, 규모, 시행 기기 등은 현시점에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